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호 504

제안년월일: 2019년 4월 25일 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고,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,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제정안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수정함.
- 나. 안 제32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를 삭제함.
- 다.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 수정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7조, 안 제

- 21조, 안 제23조, 안 제31조, 안 제35조, 안 제37조, 안 제38조).
- 라. 미 반영된 조례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(안 제39조부터 안 제 45조까지 신설).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"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"을 "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"으로 한다.

안 제1조 중 "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"을 "「서울특별시 행정기 구 설치조례」 개정 등"으로 한다.

안 제3조 중 "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노동민생정책관"을 "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5조 중 "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 경제일자리기획관"을 "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7조 중 "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도시농업 업무 담

당과장"을 "도시농업과장"으로 한다."를 ""경제정책실장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9조 중 ""공정경제담당관"으로 한다."를 "'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공정경제과장"을 "공정경제담당관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10조 중 ""경제일자리기획관"으로 한다."를 ""경제일자리기획관"으로 하고,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"서울산업통상진흥원"을 각각 "서울산업진흥원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17조 중 "같은 항 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"를 "같은 항 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하고, [별표 1]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"안전총괄본부장", "도시교통본부장"을 각각 "안전총괄실장",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21조 중 "제2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"를 "제2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"을 "안전총괄실장(이하 "실장"이라 한다)으로 하고, 제5조 및 제16조 중 "본부장"을 각각 "실장"으로 한다.

안 제23조 중 "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"를 ""도시교통실장"으로 하고, "안 전총괄관"을 "보행친화기획관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31조 중 "같은 호 다목 중 "주택건축국장"을 "주택건축본부장"으로 한다."를 "같은 호 다목 중 "주택건축국장"을 "주택건축본부장"으로 하며, 제16조제2항제3호 중 "본부장, 국장 또는 과장"을 "실장, 본부장, 국장 또는 과장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32조를 삭제한다.

안 제35조 중 "공정경제담당관"을 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

안 제37조 중 "'복지본부장"을 각각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한다."를 "'복지본부장"을 각각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제8조제4항제1호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38조 중 "'복지정책실장"으로 한다."를 "'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제7조 중 "청소년담당관"을 "청소년정책과장"으로 한다."로 한다.

안 제39조부터 안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정보기획관"을 "스마트도시정책관"으로 하고, 제9조제6 항 중 "통계데이터담당관"을 "빅데이터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0조(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8호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본부장"을 "실장"으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3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개 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각각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4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5조(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"재정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기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제1조(목적) ----- 「서울특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|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| 개정 등-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. 제3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 제3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 본 조례 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 본 조례 | 의 개정) -----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 중 "경제진흥본부 장"을 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----- "노동민생정책관" 으로 하고, 같은 조<u>제5항제2호를 다음</u> 하다. 과 같이 한다. 2. 노동민생정책관 <삭 제>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 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경 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경제진흥본부 장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 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일자리기획관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 저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경제진흥본부 장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 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"을 "도시농업과 장"으로 한다.

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비자 례」의 개정) ------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5조(「서울	특별시	경제단	민주화	기
본조	폐」의	개정)			
			-11 -1 11		
		<u>민생정</u>	잭관"	으로	한
<u>다.</u>					

<삭 제>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-	육
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	개
정)	
·.	
<u>"경제정책실장"으로</u>	한
<u>다.</u>	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 제9조(「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

제13조제3항 중 "경제기획관"을 "공정경제담당관"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"경제기 획관"을 <u>"경제일자리기획관"으</u> 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총괄본부장, 도시교통본부 장"을 "안전총괄실장, 도시교 통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

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공정경제과장"을 "공정경제담당관"으로 한다.
제10조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
<u>"경제일자리기획관"으</u> 로 하고,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
제23조의2제1항 중 "서울산업통 상진흥원"을 각각 "서울산업진
흥원"으로 한다.
제17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

호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 전총괄실장"으로 하며, <u>같은 항</u> 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 제21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 영 ·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" 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 개 정)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 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		-, <u>같은 항</u>
제2호 중	"도시교통	등본부장"을
"도시교통	등실장"으로	. 하고, [별
표 1] 관	리자란 및	비고란 중
"안전총골	·본부장",	"도시교통
본부장" 을	을 각각	"안전총괄실
장", "도	시교통실장'	' <u>으로 한다.</u>

기계 운영 · 관리조례」의 개정) 기계 운영 · 관리조례 | 의 개정)

제2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 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"을 "안전총괄실장(이하 "실장"이 라 한다)"으로 하고, 제5조 및 제 1 6조 중 "본부장"을 각각 "실장" 으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제23조(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

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"안전총 괄본부장"을 <u>"안전총괄실장"으</u> 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 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"복지 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주택건축 국장"을 "주택건축본부장"으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<삭 제>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복지본부장, 시민건강국장, 주

				"도/	시교	통실	장"	<u>0</u>
	로 하.	고,	"안전]총괼	:관"	을	"보	.행
	친화기							
제	31조(「서	울특별	별시	사호	회복/	지기	금
	조례」	의	개정))				
		같은	- ই 1	다목	중	"주1	택건	축
	<u>국장"</u>	을	"주	택건측	추본!	부장'	, <u>o</u>	로
	하며,	제16	조제:	2항저]3호	중	"본	부
	장, 크	구장	또는	과정	}" =	<u>)</u> '	'실건	앙,
	본부장							

택건축국장"을 "복지정책실장, 시민건강국장, 주택건축본부장" 으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중 "복지본부 장, 경제기획관"을 "복지정책실 장, 공정경제담당관" 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3항 중 "복지본부장"을 각각 "복지정 책실장"으로 한다.

제38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 제38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

제35조(「서울특별시	물가대책위원
회의 설치 및 운영에	관한 조례」
의 개정)	
	·
- , 노동민생정책관	

 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원회 조례」의 개정) -----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복 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한다.

-----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제7조 중 "청소년담당관"을 "청소년정책과장"으로 한다.

<신 설> 제39조(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 정)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> 제6조제2항 중 "정보기획관"을 "스마트도시정책관"으로 하고, 제 9조제6항 중 "통계데이터담당관" 을 "빅데이터담당관"으로 한다.

<신 설> 제40조(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의 개정)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 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제8호 중 "안전총괄본 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 <신 설>
 제41조(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제7조제3항 중 "본부장"을 "실

장"으로 한다.

 <신 설>
 제42조(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

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13조제1항 중 "재정관리담당 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<신 설>제43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
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
"재정관리담당관"을 각각 "재
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 <신 설>
 제44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	제10조제5항 중 "재정관리담당
	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
	로 한다.
<u><신 설></u>	제45조(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
	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
	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
	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	제7조제1항제2호 중 "재정담당
	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
	<u>으로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「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제2호 중 "경영기획관"을 "재정기획관"으로 한다.
- 제3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"경제진흥본부장"을 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미래 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"경제진흥본부장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경제진흥본부장"을 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시의 도시농업 · 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
- 제7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경제진흥본부장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한다.
- 제8조(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경제진흥본부장"을 "경제정책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경제일자리기획관
- 2. 노동민생정책관
- 제9조(「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경제기획관"을 "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공정경제과장"을 "공정경제담당관"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"호"를 "호선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경제기획관"을 "경제일자리기획관"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"경제기획관"을 "경제일자리기획관"으로 하고,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"서울산업통상진흥원"을 각각 "서울산업진흥원"으로 한다.

- 제11조(「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 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제1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 제13조제2항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"를 "도시교통실"로 한다.
- 제12조(「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"도시교통본부"를 "도시교통실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도시교통본부"를 "도시교통실"로, "담당사무관"을 "담당사무관"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"안전총괄본부를"을 "안전총괄실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주택건축국을"을 "주택건축본부를"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"를 각각 "안전총괄실"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총괄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, 도시교통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하고, [별표 1]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"안전총괄본부장", "도시교통본부장"을 각각 "안전총괄실장",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

- 제18조(「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류정 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제1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
- 제19조(「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 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"도시교통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한다.
- 제20조(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- 제21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·관리조례」의 개정) 서울 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"을 "안전총괄실 장(이하 "실장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제5조 및 제 16조 중 "본부장"을 각 각 "실장"으로 한다.
- 제22조(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3항 중 "안전총괄본부장, 도시재생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, 도시재생실장"으로 한다.
- 제23조(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도시교통실장"으로 하고, "안전총괄관"을 "보행친화기획관"으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제25조(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"주택건축국장, 복지본부장, 도시계획국장, 도시재생본부장"을 "주택건축본부장, 복지정책실장, 도시계획국장, 도시재생실장"으로 한다.

- 제26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도시재생본부"를 "도시재생실"로 한다.
- 제27조(「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시재생본부장"을 "도시재생실장"으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도시재생본부장"을 각각 "도시재생실장"으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도시재생실장
- 5. 주택건축본부장
- 제30조(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제1호 중 "도시교통본부장, 도시계획국장, 주택건축국장"을 "도시교통실장, 도시계획국장, 주택건축본부장"으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"복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주택건축국장"을 "주택건축본부장"으로 하며, 제16조제2항제3호 중 "본부장, 국장 또는 과장"을 "실장, 본부장, 국장 또는 과장"으로 한다.

제32조 삭제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 중 "복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"복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중 "복지본부장, 경제기획관"을 "복지정책실장, 노동민생정책관"으로 한다.

제36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 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복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로 한다.

- 제37조(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 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3항 중 "복지본부장"을 각각 "복지정책실장"으 로 하고, 제8조제4항제1호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 로 한다.
- 제38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복지본부장"을 "복지정책실장"으로 하고, 제7조 중 "청소년담당관"을 "청소년정책과장"으로 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정보기획관"을 "스마트도시정책관"으로 하고, 제9조제6항 중 "통계데이터담당관"을 "빅데이터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0조(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8호 중 "안전총괄본부장"을 "안전총괄실장"으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본부장"을 "실장"으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3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각각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4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"재정관리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5조(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2호 중 "재정담당관"을 "재정균형발전담당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